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3년 11월 1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20 호

##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(특별휴가)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 3 9 0 - 7 6 0 9 )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5조(특별휴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신설)</p>	<p>제35조(특별휴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

## 참고사항

□ 「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

### 제23조(특별휴가)

⑫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5.12.09.>